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건강증진과장)
제출 연월일	2022. 2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2022년 신규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「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출산율 증가를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출산가정 가족사진 촬영권 무료 지원 신설(안 제4조제5호)
- 그 밖에 임신·출산·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(안 제4조제6호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완료(의견없음)
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없음

고령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입양 :”을 “입양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재혼 :”을 “재혼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단서 중 “단”을 각각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출산장려금 :”을 “출산장려금: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출생아건강보험료 :”를 “출생아건강보험료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그 밖에 군수는 임신·축하”를 “군수는 출산축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군수는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6. 그 밖에 군수는 임신·출산·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(생략)</p> <p>② 출생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르고, 출생아의 순서는 주민등록번호순에 의한다.</p> <p>1. <u>입양</u> :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를 입양할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, 입양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.</p> <p>2. <u>재혼</u> :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. 단,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.</p> <p>3. 이혼·사망 등 가.·나. (생략) 다.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. 단, 보호자 및 출생아는 고령군내 주소리를 두어야 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<u>입양</u>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<u>재혼</u>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4조(지원기준)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.

1. 출산장려금 : 첫째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생후 첫돌시 50만원, 둘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, 셋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3년간,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5년간(입양자녀 포함)
2. 출생아건강보험료 : 매월 1명당 50,000원 이내로 3년간. 다만, 협약업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.
3. (생략)
4. 그 밖에 군수는 임신·축하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10만원범위 내의 출산 용품을 지원한다. (출생아 1인당 1회에 한정한다.)

<신 설>

제4조(지원기준) -----

-----.

1. 출산장려금: -----

2. 출생아건강보험료: -----
-----.

-----.
3. (현행과 같음)
4. 군수는 출산축하 -----

5. 군수는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비용

<신 설>

을 지원할 수 있다.

6. 그 밖에 군수는 임신·출산·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소 건강증진과	
연 락 처	054)950 - 7951